

연구보고 2016-14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6-14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

김 정 순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

Study for Improvement of Child Safety and  
Protection Laws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6.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함.
- 오늘날 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제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가정안·밖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증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도 강조되고 있음

### □ 연구의 목적

- 이에 우리의 아동들이 생명·신체·재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연구의 범위

- 본보고서는 광대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

### □ 연구의 내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아동학대방지 대책(2016. 3. 29) 등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관련 정부정책 등의 내용을 살펴봄
-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
  - 헌법상 아동의 지위 및 법령상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 월가정의 양육관련 아동의 안전과 보호법제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
- 외국의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 : ①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1974년 제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1992년 제정), 주의 아동학대 신고법

: ②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 1980), 입양과 안전한 가족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 가정위탁법제

- 일본

: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 아동학대방지법(2000년 제정)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정비방안

①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관련 개선

②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필요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①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구체화

②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벌의 금지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① 친권 조항의 관련법체계상 개선방안

② 친권상실 등의 제도 관련 개선방안

③ 친권과 가사소송 관련 개선방안

④ 가정위탁의 후견인제도 개선방안

- 기 타

: 관련 예산과 아동관련 담당 공무원 인력의 확보

### Ⅲ.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의 향후 제·개정시 입법자료 활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지원 기반 마련정책 지원

▶▶ 주제어 : 아동복지, 아동학대, 친권, 후견, 가정위탁

---

---

# Abstract

---

---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Our future generation, children should be safe and protected so that they can live a happy life.
- Children these days are losing parental care at home because family functions have been weakened and dissolved. Furthermore, as child abuse cases increas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children become social issues.
- Even though parents have the first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safety of children, duties of the State and society in providing children with safety and protection have been also emphasized.

### Purposes of this study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system to raise our children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by protecting them in any circumstances threatening the children's life, body, property, etc.
-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 II. Main Contents

### Scope of this study

-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hild welfare Act; Act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prohibition of child abuses; and Acts governing parental rights and legal guardianships in terms of child safety and protection among many laws govern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 Contents of this study

- Current status regard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 Review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cluding the Children Policy Master Plan (2015~2019) and Measure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s (Mar. 29, 2016)
- Current status of child safety and protection laws in Republic of Korea
  -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children and statutory definitions of children
  - The Children Welfare Act
  - Laws on the prevention and prohibition of child abuses
  - Laws concern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placed in other systems than their own family

- Laws governing parental rights and guardianships in terms of child safety and protection
- Current status of relevant laws in other countries
  - United States
    - ①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established in 1974),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established in 1992), laws regarding child abuse reporting in the states
    - ②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AACW), Adoption and Safe Act of 1997 (ASFA), foster care laws
  - Japan
    - 「Child Welfare Act」 (established in 1947), 「Child Abuse Prevention Act」 (established in 2000)
- Issues on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improvement thereof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laws regarding the safety of and protection for children
    - ①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ag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 ② Need to establish a Child Abuse Prevention Act (tentative name)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prohibition of child abuses

-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child abuses and classification of child abuses
- ②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to prevent child abuses and enhancement of disciplinary power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parental rights and guardianships in terms of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 ① Suggestion to improve the structure of provisions governing parental rights under relevant statutes
  - ② Suggestion to improve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 ③ Suggestion to improve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parental rights and the Family litigation
  - ④ Suggestion to improve foster care and guardianship system
- Other Issues
  - : Securing a budget and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ren affairs

### **III. Expected Effect**

- To be used as legislative references when child safety and protection laws are established or amended in the future.
- To provide support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future gener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hildren

 **Key Words** : child welfare, child abuse, parental rights, guardianship, foster care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6
제 2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	17
제 1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통계 현황 .....	17
1. 아동인구 현황 .....	17
2. 아동복지사업 관련 예산 현황 .....	17
3. 아동학대 현황 .....	19
4.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수 현황 .....	20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동향 .....	21
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	21
2. 아동학대방지 대책 .....	25
제 3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	29
제 1 절 개 설 .....	29
1. 헌법상 아동의 지위 .....	29
2. 아동 관련 법제상 아동의 정의 .....	30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32
1. 아동복지법	32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75
3.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 법제	82
4. 소 결	88
제 4 장 외국의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	89
제 1 절 미 국	89
1. 개 관	89
2. 아동학대 관련 법제	93
3. 가정위탁 법제	103
4. 입양 관련 법제	108
5. 친권상실 관련 법제	110
6. 소 결	112
제 2 절 일 본	113
1. 개 관	113
2. 법제현황	114
3. 소 결	124
제 5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7
제 1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방안	127
1.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관련 개선	127
2.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필요	128
제 2 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31

1.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구체화 .....	131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벌의 금지 .....	133
제 3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	135
1. 친권 조항의 관련법체계상 개선방안 .....	135
2. 친권상실 등의 제도 관련 개선방안 .....	136
3. 친권 및 가사소송 관련 개선방안 .....	137
4. 가정위탁의 후견인제도 개선방안 .....	137
제 4 절 기 타 .....	138
참 고 문 헌 .....	14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 기능의 약화 및 해체 등으로 인한 가족 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 문제가 새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약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요구가 보편화되고 다양화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아동정책의 범주로 끌어들이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법제도의 경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책무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이 생명·신체·재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탄탄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보고서는 다양하고 광대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떡거리, 유해환경물질, 교통안전, 학교 및 교육환경 안전 등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후행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관련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 (1) 헌법상 아동의 지위, 그리고 법령상 아동의 정의 규정을 살펴본다.
- (2) 아동복지의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을 살펴본다.
- (3)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 (4)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 관련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법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법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제 2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 제 1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통계 현황

#### 1. 아동인구 현황

연령별 인구 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저출산 현상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인구 수

(단위 : 명)

연 도	15세미만	15~64세	65세이상	합 계
2005	8,986,128	33,690,088	4,365,218	47,041,434
2010	7,786,973	34,779,121	5,424,667	47,990,761
2015	6,906,707	36,229,874	6,569,082	49,705,663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 2. 아동복지사업 관련 예산 현황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사업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의 예·결산 추이는 아래 <표 2>과 같다. 지난 5년간 아동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동복지사업의 예·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사업유형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학대 신고접수 및 서비스 연계 (4.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66	1,064	1,167	1,528	1,383	95.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	—	—	14,539	14,24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개편	—	—	—	3,008	—	
	소 계	1,066	1,064	1,167	19,075	15,628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32.5)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46,190	57,588	65,178	65,781	66,834	1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00	150	200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20,978	25,494	27,924	36,281	42,743	
	소 계	67,168	83,082	93,202	102,212	109,777	
요보호 아동보호 (10.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6,868	8,134	8,666	10,001	12,666	41.3
	가정위탁지원·운영	1,547	1,477	1,232	1,232	1,232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	—	—	5,705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913	7,259	7,407	8,623	13,71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	7,630	7,630	7,630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시범사업	611	827	744	707	750	
	소 계	9,026	10,438	25,679	33,898	35,992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3.6)	요보호아동자립지원	960	1,014	1,024	1,021	1,000	5.7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8,810	9,434	10,364	10,747	11,217	
	소 계	9,770	10,448	11,388	11,768	12,217	
방과 후 돌봄 서비스 (48.5)	지역아동센터지원	110,924	127,042	131,969	137,716	142,764	6.4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190	2,033	1,692	2,390	2,430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463	16,047	14,443	17,181	18,508	
	소 계	127,577	145,122	148,104	157,28	163,702	
합 계		214,607	250,154	279,540	324,240	337,316	12.0

주: 1. 2010~2015년은 결산액, 2016년은 예산액 기준임.  
 2. 사업유형 항목 ( ) 안의 수치는 2016년 합계 기준 사업유형별 예산액의 비중임.  
 3.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지출로 한정하여 작성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6. 6.)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이채정, “아동복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사업평가 16-09 통권 361호, 국회예산정책처, 11쪽. 재인용

### 3. 아동학대 현황

<표 3> 전국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증가추이(2010-2014)

연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혐의 있음		사망아동 (명)
	건수	증가율	건수	비중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10	9,199	-	7,406	80.5%	-	5,657	-	3
2011	10,146	10.3%	8,325	82.1%	12.4%	6,058	7.1%	13
2012	10,943	7.9%	8,979	82.1%	7.8%	6,403	5.7%	8
2013	13,076	19.5%	10,857	83.0%	20.9%	6,796	6.1%	22
2014	17,791	36.0%	15,025	84.5%	38.4%	10,027	47.5%	17

출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2015, 재인용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가 2013년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출처: 관계부처합동 정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2016. 3. 29), 3쪽 재인용.

<표 4>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건, %)

구 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4년
신고접수건수	4,133	8,000	9,199	17,782
재신고건수	20	573	1,262	2,338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7.6	13.7	13.1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7), 251쪽 재인용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주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대비 아동학대 재신고접수율이 2005년에 10% 이하였지만 2010년 조사때부터 10%를 넘은 것은 아동 재학대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수 현황

최근 10년간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수에 관한 통계는 아래 <표 5>와 같다. 최근 2010년대에 들어서 요보호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보호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년소녀가정	308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0
입양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가정위탁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시설보호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보호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연도별) 통계자료 참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quick_02))

##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동향

### 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sup>1)</sup>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기간 5년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2015.5.13.). 이 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책무이행의 일환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개선하여야 하는 우리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현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관련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평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제1차 기본계획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①“미래를 준비하는 삶”, ② “건강한 삶”, ③“안전한 삶”, ④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5.13. 배포), “아동의 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관계부처 합동,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 출입기자 설명회(2015.5.12.),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요약)” 요약 및 인용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

“함께하는 삶”의 4개를 추진영역으로 하고 기본계획 실행기반으로 ①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②“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③“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④“민간과의 협력 강화”, ⑤“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16개의 중점과제와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위에서 제시된 아동정책 영역별로 5년 이내에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표와 목표치를 선정하여 관련 아동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아동정책의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6> 아동정책 목표치 성과관리(안)<sup>2)</sup>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 부처	비고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복지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복지부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미래준비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복지부 (문화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교육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2) 관계부처 합동,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20쪽 재인용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동향

성과지표		현재	목표치 (‘19)	주관 부처	비고
건강한 삶	영유아건강검진률	63.7%	90%	복지부	건강검진 결과분석
	신체활동 실천율	14.7%	23%	복지부 교육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안전한 삶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9명	2.9명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26,962명 (성폭력) 294,188명 (상해폭행)	25,000명  280,000명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함께 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	4.61점	5.4점	복지부	아동종합 실태조사
	소년범 재범률	41.63%	37%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아동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의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아동관련 주요 계획 및 대책 현황<sup>3)</sup>

분 야		주요 대책
종합 계획	아 동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청소년육성기본계획(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일 반	사회보장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보 육 · 교 육	아 동	보육종합대책(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유아교육법)
		인성교육종합계획(인성교육진흥법)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학교폭력예방대책법)
문 화	일 반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독서문화진흥법)
		산림교육기본계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건 강 · 식 품	아 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
	일 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종합계획(건강검진기본법)
		결핵관리종합계획(결핵예방법)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법)

3) 관계부처 합동 출입기자 설명회(2015.5.12.),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요약)”, 20쪽, 「참고1: 아동관련 종합대책현황」 재인용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

분 야		주요 대책
		식품안전종합대책(식품안전기본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기본계획(식생활교육지원법)
안 전	아 동	어린이안전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린이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보건법)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아동복지법)
		어린이제품안전 기본계획(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종합대책(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 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권 리	아 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 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국가인권위원회법)

## 2. 아동학대방지 대책

정부는 2016년 3월 29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sup>4)</sup>에서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상황을 감독·평가하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는 법정 위원회 이다..

<표 8>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내용<sup>5)</sup>

사전 예방	1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동권리헌장 제정 및 안전교육강화 -지역사회 감시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
		-전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2	조기발견 강화
		-정부합동발굴시스템 구축 : 의무교육, 미취학,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활용 ‘아동행복지원시스템’가동 : 건강, 소득, 고용 등 행정기관 빅데이터 활용 위험아동발견
사후 지원	3	신속대응 및 처벌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동행출동 : 우선분리보호 및 응급조치
		- 가해자 처벌 및 교육강화 :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활용 : 상담 및 교육 내실화
		- 현장대응 인프라 강화
	4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방지
	-피해아동 보호 :의료, 심리치료, 긴급복지사업 :가정복귀절차 강화 : 쉼터, 시설, 전문가정 위탁 서비스 제공	

5) 아동학대방지대책(2016. 3, 29)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추진도” 재인용 및 재구성  
[http://blog.pmo.go.kr/m/newblog/society.jsp?mode=view&article\\_no=1342&board\\_wrapper=%2Fm%2Fnewblog%2Fsociety.jsp&pager.offset=25&board\\_no=119](http://blog.pmo.go.kr/m/newblog/society.jsp?mode=view&article_no=1342&board_wrapper=%2Fm%2Fnewblog%2Fsociety.jsp&pager.offset=25&board_no=119)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재확대 방지 사후관리 : 정기적 가정방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기능 회복지원 : 소득, 건강, 취업 등 종합지원</li></ul>

## 제 3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 제 1 절 개 설

#### 1. 헌법상 아동의 지위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거나, “누구든지.....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제1항)거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일원인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동’의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아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여자”(「헌법」 제34조제3항), “노인”(「헌법」 제34조제4항), “청소년”(「헌법」 제34조제4항), 그리고 “신체장애자”(「헌법」 제34조제5항)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가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sup>6)</sup>가 있다. 하지만,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서 “아동”은 18세미만인 사람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청소년기본

6) 이용교,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8년 7월), 188쪽.

법」제3조제1호), 나아가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고 있는 것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서 연령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범주에 “아동”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갭이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 2. 아동 관련 법제상 아동의 정의

아동관련 법령에서의 ‘아동’ 등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이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이외에 “영·유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아동·청소년”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9> 법령상 아동 등에 관한 정의 규정(예시)

관련 법	내 용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호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관련 법	내 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의 법적 정의를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up>7)</sup>의 아동연령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이 협약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를 “...법에 의해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않은 18세 미만”(동협약 제1조)이라 규정하고 있다.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89.11.20.에 채택되어 1990.9.2에 발효된 UN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12.20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이 협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볼 수 있는데, i)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4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ii)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제8조의2제1항)고 하고, 그리고 iii)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의4).”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겠다.

## 제 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 아동복지법

#### (1) 개 관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sup>8)</sup>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하였으며,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였다(동법 제2조제1항).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조선감화령」<sup>9)</sup>이 폐지되었다.

그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아동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1차 전부개정<sup>10)</sup>이 있었다. 이 개정 에 의하여 법의 제명이 「아동복지법」 바뀌고, 기존의 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중점이 있었다면 개정된 법은 일반아동까지도 포함하는 전체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였으며(동법 제1조), 아동의 보호양육과 육성에 대한 책임이 보호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더불어 지도록 하는 것(동법 제3조) 이었다.

제2차 전부개정은 2000년에 있었다<sup>11)</sup>. 한층 더 늘어난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8)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시행 1962.1.1.)

9) 조선총독부제령 제12호, 1923.9.3., 제정(시행 1923.10.1., 일부개정 1942.3.23.)

10) 법률 제3438호, 1981.4.13., 전부개정(시행 1981.4.13.)

11) 법률 제6151호, 2000.1.12., 전부개정(시행 2000.7.13.)

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제3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은 2011년에 이루어졌다.<sup>12)</sup> 이 전부개정법률은 5개년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제7조 및 제8조), 검사에게도 친권상실 신고 청구권 부여(제18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의 공익광고 편성 요청권(제2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수교육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등의 포함(제25조 및 제26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제28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012. 10. 22에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sup>13)</sup>이 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sup>14)</sup>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제32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상향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제75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4년 1월 28일에 또한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sup>15)</sup>이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제3조제7의2호 신설), ②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

12) 법률 제11002호, 2011.8.4., 전부개정(시행 2012.8.5.)

13) 법률 제11520호, 2012.10.22., 일부개정(시행 2013.1.23.)<sup>1)</sup>

14) 「아동복지법」에서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③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리고 ④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주변구역 중에서 지정하고 있다(제32조제1항).

15) 법률 제12361호(시행 2014.9.29.)

치단체로 함(제22조제2항), ③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등의 통보 의무(제27조의2 신설), ④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의 피해 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7조의3 신설), ⑤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8조의2 신설),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 지원(제29조제5항 신설), 그리고 ⑦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및 점검·확인(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등이다.

2015년 3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sup>16)</sup>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 구성원 파악을 통한 사후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고(제22조의2 신설),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의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며(제26조),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아동에 대한 체벌 등(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의 금지(제5조제2항 신설)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2015년 12월 29일에 또한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sup>17)</sup>이 있었다.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

16)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17) 법률 제13653호(시행 2016.6.30.)

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제31조제1항에 제3호(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를 신설하여 아동안전 교육계획의 내용으로 추가한 것이었다.

최근 2016년 3월 22일에 「아동복지법」의 개정<sup>18)</sup>이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추가 신설<sup>19)</sup>, ② 아동종합 실태조사의 협조근거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③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의 도입(제11조의2 신설. 2019.3.23.시행), ④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제15조제2항 신설. 2018.3.23.시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통한 관리(제15조의2 신설. 2019.3.23.시행), ⑤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제15조의3 신설. 2018.3.23.시행), ⑥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제16조제2항·제3항 신설. 2018.3.23.시행)와 보호기간 연장(제16조제4항 개정. 2018.3.23.시행), ⑦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후의 사후관리(제16조의2 신설. 2018.3.23.시행)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의 사후관리에의 피해아동 보호자의 협조 의무화(제28조제3항 신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의 성실 참여(제29조의2 후단 신설), ⑧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 설치·운영(제46조제2항제2호 신설), 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 마련(제53조의2 신설), 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18)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시행 2016.9.23., 시행 2018.3.23., 시행 2019.3.23.)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2018.3.23. 시행) 하는 것을 추가 신설하였다.

의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제5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⑪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및 사업의 정지나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시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다른 시설로의 이전을 도우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보호조치 실시여부의 확인의무를 명확히 하고(제51조제2항·제3항 및 제56조제2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제71조제2항제1호 신설)이 있다.

<표 10> 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 연혁

법률명	주요내용
1. 아동복지법 [시행 1962.1.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1. 목적 :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목적). 2. 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함(제2조제1항). ※「조선감화령」(1923.9.23, 제령 제12호)을 폐지함.
2. 아동복지법 [시행 1981.4.13.] [법률 제3438호, 1981.4.13., 전부 개정]	1. 목적 :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책임 :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짐(제3조). ※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함. ※보호대상범위를 요구호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함.

법률명	주요내용
	<p>※아동의 보호양육·육성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더불어 지도록 함.</p>
<p>3. 아동복지법 [시행 2000.7.13.] [법률 제6151호, 2000.1.12., 전부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li> <li>2.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제2조제4호).</li> <li>3.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제1항).</li> <li>-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윤락행위 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⑦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또는 ⑨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제2항).</li> </ul> </li> </ol>

법률명	주요내용
	<p>-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됨(제3항).</p> <p>4. 금지행위(제29조) : 누구든지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p> <p>※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의 유형 명시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명시</p>
<p>4. 아동복지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전부개정]</p>	<p>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하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제7조 및 제8조)</p> <p>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1조)</p>

법률명	주요내용
	<p>3.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제17조).</p> <p>4.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p> <p>※법원에 대한 청구권자에 검사추가          ※법원에 대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변경·확대          ※청구사유에 “아동학대”를 명시함</p> <p>5.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p> <p>6.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p> <p>7.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제27조)</p> <p>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p>

제 3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법률명	주요내용
	<p>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p>
<p>5. 아동복지법 [시행 2013.1.23.] [법률 제11520호, 2012.10.22., 일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③「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리고 ④「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주변구역 중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32조제3항 신설).</li> <li>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상향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li> </ol> <p>※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아동학대의 예방 및 구제의 실효성 제고</p>
<p>6. 아동복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일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제3조제7의2호 신설)</li> <li>2. 긴급전화 설치주체 :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함(제22조제2항).</li> <li>3. 아동학대 등의 통보 :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가짐(제27조의2 신설).</li> <li>4.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li> </ol>

법률명	주요내용
	<p>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제27조의3 신설).</p> <p>5.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28조의2 신설).</p> <p>6. 주소지 외의 취학 지원 : 「초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29조제5항 신설).</p> <p>7.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관계당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확인하여야 함(제29조의3 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p>
<p>7.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p>	<p>1. 보호자 등의 책무 :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p> <p>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함(제22조의2 신설).</p> <p>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고지 및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제26조).</p> <p>4.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5조제3항 제1호의2 신설)</p> <p>※아동에 대한 체벌 등의 금지</p>

제 3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법률명	주요내용
	<p>※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가족구성원 파악으로 사후조치의 실효성 제고</p> <p>※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고지 및 교육 강화</p> <p>※신고의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교육 의무 제고</p>
<p>8. 아동복지법 [시행 2016.9.23] [시행 2018.3.23] [시행 2019.3.23]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p>	<p>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p> <p>※[시행일 : 2018.3.23.]</p> <p>2.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협조 :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p> <p>3. 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제11조의2 신설).</p> <p>※[시행일 : 2019.3.23.]</p> <p>4.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시·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p> <p>※[시행일 : 2018.3.23.]</p>

법률명	주요내용
	<p>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제15조의2 신설).</p> <p>※[시행일 : 2019.3.23.]</p> <p>4.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시·도지사 등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제15조의3 신설).</p> <p>[시행일 : 2018.3.23.] 제15조의3</p> <p>5.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시·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p> <p>※[시행일 : 2018.3.23.]</p> <p>6.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 시·도지사 등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제16조의2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의 사후관리에의 피해아</p>

법률명	주요내용
	<p>동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제28조제3항 신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의 성실 참여를 규정함(제29조의2 후단 신설).</p> <p>※[시행일 : 2018.3.23.] : 제16조의2</p> <p>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함(제16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p> <p>※[시행일 : 2018.3.23.] : 제16조제3항 및 제4항</p> <p>8.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 아동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확대 :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제46조제2항제2호 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제53조의2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제5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p> <p>9. 휴업·폐업 등의 보호대상아동의 권익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제51조제2항·제3항 신설).</p> <p>10. 아동복지시설 등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시의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및 벌칙: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권익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p>

법률명	주요내용
	<p>록 하고(제56조제2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제71조제2항제1호 신설).</p>

## (2) 주요 내용

현행 「아동복지법」<sup>20)</sup>은 총 제7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총칙(제1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제2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3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4장.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시설(제5장), 보칙(제6장) 및 벌칙(제7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또한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제3조제1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동조제2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며(동조제4호),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

20)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시행 2016.9.23.)

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동조제5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동조제7호),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동조제7의2호).

## 2)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4조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 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및 제8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제10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제11조),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의 도입(제11조의2 : 2019.3.23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도(제13조), 그리고 시·군·구 아동위원 제도(제14조)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1조의2제1항).<sup>21)</sup>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⑤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⑥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제12조제1항).

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제13조제1항 및 제3항).

---

21) 이 제도의 시행은 2019년 3월 23일부터이다.

사. 시·군·구 아동위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제14조).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3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단으로서 아동 보호조치(제15조 : 2018.3.23.시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제도의 도입(제15조의2 : 2019.3.23.시행),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도의 도입(제15조의3 : 2018.3.23시행),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한 경우에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된 경우의 해당 시설 퇴소조치(제16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 신청 제도의 도입(제16조제2항 및 제3항 : 2018.3.23.시행),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제도 도입(제16조제4항 : 2018.3.23.시행),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등의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제16조의2 : 2018.3.23.시행), 아동매매 행위 등의 10개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7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의 청구권(제18조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갖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권(제18조제2항) 및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권(제18조제5

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제19조), 임시 아동 후견인 제도(제20조제2항), 그리고 법원심리의 보조인 선임 등(제2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치 조치 의무(제2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제22조의2),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지정(제23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제2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26조),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등의 통보의무 등(제27조의2),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제27조의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제28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8조의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제29조의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29조의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및 공개(제29조의4), 그리고 취업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제29조의5)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아동보호서비스

##### ①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①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④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⑤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그리고 ⑥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③부터 ⑥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제3항).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의2).<sup>22)</sup>

#### ③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제15조의3).<sup>23)</sup>

22)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의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은 시행일이 2018년 3월 23일이다.

23)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은 시행일이 2018년 3월 23일이다.

#### ④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제1항).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제16조제3항).<sup>24)</sup>

그러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②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③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sup>25)</sup>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제4항).

#### ⑤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

24)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은 시행일이 2018년 3월 23일이다.

25) 2018년 3월 23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제16조의2).<sup>26)</sup>

⑥ 금지행위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래의 <표 11>와 같은 행위를 아동에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표 1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유형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7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6) 이 제도는 시행일이 2018년 3월 23일부터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유형
제11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⑦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하며(제18조제1항),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8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제2항), 이런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제18조제4항),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제18조제5항).

⑧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제19조제1항),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제19조제2항). 후견인의 선임 및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9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제19조제4항).

#### ⑨ 아동의 후견인 선임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0조).

#### 나.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③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④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항).

②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③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④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의 확인,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2조의2).

③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4조제1항 및 제2항).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제2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26조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③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제3항).

⑤ 아동학대 등의 통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 및 제3항).

⑥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의3).

⑦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8조).

⑧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8조의2제3항).

#### ⑨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이러한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9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29조제5항).

#### 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 ⑪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제한 및 점검·확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sup>27)</sup>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제29조의3제1항),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27) 이 법에서 “아동관련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①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⑧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⑪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⑫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에 한정한다), ⑬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⑮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⑯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⑲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⑳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그리고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제29조의4 제1항),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29조의4제4항).

⑫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의 폐쇄 등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해임을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요구하고(제29조의5제1항),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제29조의5제2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제29조5제3항).

5)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4장에서는 우선,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의 설정(제30조), 아동학대의 예방 등의 아동 안전 교육(제31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제33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제34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제35조)과 보건소의 업무(제3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기관의 설치·운영(제37조),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자산형성 지원 등(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① 안전기준의 설정 및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sup>28)</sup>과 아동용 제품과 아동용 놀이 시설물에 관한 “아동용품 안전기준”<sup>29)</sup>을 정하고(제30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교육기준”<sup>30)</sup>에 따라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재난대비 안전, (5)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제31조).

②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4)「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32조제1항),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2조제3항).

28) 자세한 것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참조.

29) 자세한 것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참조.

30) 자세한 것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3] 교육기준 참조.

③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및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으며(제33조제1항),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협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④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보건소의 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며(제3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①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④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5조제2항 및 제3항).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①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②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그리고 ③ 아동의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제36조).

나.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과 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sup>31)</sup>를 실시하며(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37조제3항).

## ②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 i) 자립지원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sup>32)</sup>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②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③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④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⑤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33)</sup>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31) 통합서비스는 ①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②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③ 부모의 양육 지도, ④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32)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①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는 ③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

3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및 ③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

ii)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sup>34)</sup>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9조제1항).

iii) 아동자립지원추진위원회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41조).

iv)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sup>35)</sup>을 실시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

34) 자립지원계획에는 ①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②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③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35)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아동이 범위는 ①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아동의 계좌로 매월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6) 아동복지시설

제5장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위탁·성과평가 등(제45조에서 제47조까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제48조 및 제49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50조) 및 휴업·폐업의 신고 등(제51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52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제54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제55조), 아동복지시설에의 전문인력 배치 및 종사자 교육훈련실시(제54조 및 제55조),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제56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제5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sup>36)</sup>을 두며(제4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sup>37)</sup>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

3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②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③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④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⑤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⑥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⑦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제1항), 시행령 제45조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앞의 ⑧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①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아동학대 관련 국제 교류, 그리고 ③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3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③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상 두어야 하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4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제45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7조제1항).

#### 나. 가정위탁<sup>38)</sup>지원센터의 설치 등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sup>39)</sup>를 두며(제4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④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⑥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 앞의 ⑦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①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②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그리고 ③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38)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위탁가정이 되려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①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가정위탁보호를 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한다)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이어야 하며, 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3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과적인 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sup>40)</sup>를 두나,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4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48조제4항).

#### 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등

#####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5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50조제2항).

##### ② 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51조

---

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④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⑤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49조제1항). 앞의 ⑦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②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③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의 업무를 말한다(「아동복지법시행령」 제50조제1항).

40)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①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②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③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④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⑤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⑥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⑦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49조제2항). 앞의 ⑦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아동복지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51조제2항),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하여야 한다(제51조제3항)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1)아동양육시설, (2)아동일시보호시설, (3)아동보호치료시설, (4)공동생활가정, (5)자립지원시설, (6)아동상담소, (7)아동전용시설, (8)지역아동센터, (9)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으며(제52조제1항),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제52조제2항).

<표 1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번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li>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li> </ul> </li> </ul>

제2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번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li> </ul>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⑥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제52조제3항).

<표 13> 아동복지시설의 추가사업의 종류

번호	사업의 종류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53조제1항),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제53조제2항).

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공동생활가정(제52조제1항제4호)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제53조의2).

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sup>41)</sup>으로 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5조제1항).

⑦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④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⑥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또는 ⑦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56조제1항), 이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6조제2항),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sup>42)</sup>으로 정한다(제56조제3항).

41)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과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말한다.

42)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을 말한다.

7) 벌 칙

가.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제1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아래의 <표 14>와 같이 처벌한다(제71조제1항).

<표 14>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의 내용

제17조	금지행위	처벌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1항제1의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	금지행위	처벌
제10호 또는 제11호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항제3호)
제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항제4호)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제72조),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하고(제73조), 나아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4조).

#### 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③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⑤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⑥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2항).

다. 과태료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며(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제75조제4항).

<표 15> 과태료 규정 내용

과태료	대상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li> <li>●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li> </ul>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li> </ul>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신고위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li> <li>● 제31조를 위반하여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li> <li>●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li> </ul>

##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 (1) 개 설

주지하다시피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동안 훈육 등의 이유로 사회적 이슈로 분출되지 못했으며 또한 대부분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하여 외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여러 규정들의 신설을 가져왔다. 물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존재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아동관계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여러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아동을 학대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제는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약칭한다)<sup>43)</sup>이나 형사관계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동복지법」에는 없었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sup>44)</sup>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가정구성원사이의 폭력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마련 등의 필요성과 가정외의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43) 최근개정: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시행 2016.1.25.)

44) 이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제2조제1호).

이에 따라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sup>45)</sup>되었다. 제정이유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sup>46)</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 제정과 함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규정들은 앞에서 이미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관련 내용을 생략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장 벌칙으로 편제되고 있다. 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주요내용

### 1) 2014년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아동학대의 정의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45)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시행 2014.9.29.)

4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53&ancYd=20140128&ancNo=12341&efYd=201409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방문 2016년 9월 20일)

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제2조제3호)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이라 할 수 있다.

#### 나. 아동학대범죄의 신설 및 처벌 특례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가. 에서 하.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4호). 이 중에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제4조 및 제5조), 아동학대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및 제7조).

#### 다. 친권상실 제도 도입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제5조의 아동학대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제6조의 상습범)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9조).

#### 라.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과 신고 의무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마. 아동보호사건의 가정법원 관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있다(제18조).

바. 후견인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등 조사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 및 제25조).

자. 아동보고사건의 처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차. 비밀누설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및 통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조).

2) 2016년 일부개정법률<sup>47)</sup>의 주요 내용

2016년 5월 29일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개정되었다. 이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의 정의 규정 신설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제2조제4의2호, 2016.11.30시행).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신설, 2016.11.30시행),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66조의2, 2016.11.30시행)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제10조의3, 2016.11.30시행)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47) 법률 제14172호, 2016.5.29., 일부개정(시행 2016.11.30.)

#### 다. 고소에 대한 특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제10조의4제1항), 피해아동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제10조4제1항, 신설), 이와 같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의4제3항, 2016.11.30시행)

#### 라.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친고죄인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인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sup>48)</sup>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7조 신설, 2016.11.30.시행)

---

48) 보호처분에는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해당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 이 중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처벌법」 제37조).

## 2) 현행 법률<sup>49)</sup>의 주요 내용

앞에서 기술한 2014년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2016년의 개정법률(현행법률)의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서술하기로 한다.

###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⑥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그리고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 나.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

49)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시행 2016.1.25.)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⑦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⑧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그리고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제47조제1항).

### 3.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 법제

#### (1) 「민법」의 친권<sup>50)</sup> 및 후견 관련 규정

##### 1) 친권 상실 등

###### 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22조의2). 이 조항은 친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이 법원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함에도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의 수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긴급한 사안을 예정한 규정이다.

###### 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

50) 최근 개정: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6.2.4.)

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 제1항).

친권정지와 친권상실선고는 요건이 동일하다<sup>51)</sup>.

#### 다.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의2). 특정의 권리행사가 자녀 복리에 문제가 될 경우 문제가 되는 개별적인 권리에 한정하여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 2) 친권자 지정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912조 제2항). 이 규정은 자녀복리가 친권자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일단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생존친 또는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6항).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 또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은 생존친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51) 친권의 정지기간은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2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제924조 제2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3) 후견인 선임

#### 가. 친권자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의 후견인 선임

이혼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09조의 2 제3항, 제4항).

#### 나. 임시 대행자 선임

법원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백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제909조의 2 제5항).

#### 다. 미성년 후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혹은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이 상실, 제한, 일시정지 등이 되었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제928조).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45조 본문).

### (2) 「아동복지법」의 친권·후견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후견 관련 규정의 내용은 이미 제3장 제2절 1. 아동복지법에서 이미 기술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후견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여기서 기술한다.

### 1)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복지법」상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이고 (제18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제52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다(제18조 제2항).

### 2) 아동의 후견인 선임과 변경

후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제19조 제1항) 등이다.

후견인 변경(제19조 제2항) 청구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검사이다. 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는 청구권자는 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선임이 청구된 때에는 법원은 아동복지실현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아동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기관전담기관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3) 「아동학대처벌법」의 친권 및 후견인 관련조항

1)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 아동학대범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로서의 친권 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로 친권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친권행사의 정지는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정지<sup>52)</sup>된다는 점에서 친권 자체를 박탈하는 친권상실과 구별된다.

3) 임시조치로서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하나로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의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제4호).

4) 보호처분으로서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판사는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36조제1항).

---

52)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 5) 후견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sup>53)</sup>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동조제2항).

### (4) 「입양특례법」의 친권·후견 관련 규정

#### 1) 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의 입양동의

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다(제12조 제1항).

#### 2) 친권행사의 정지

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자녀를 인도하면 그 때부터 부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제22조 제2항). 친권행사의 정지란 부 혹은 모가 친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친권행사가 정지되면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제22조 제1항).

---

53) 2016.5.29.개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시행일 : 2016.11.30.).

#### 4. 소 결

앞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여러 사건·사고로 인한 새로운 입법수요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다 보니 종합선물세트가 되어버려서 관련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가 안 맞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 및 후견제도 관련규정도 많이 중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외국의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

### 제 1 절 미 국

#### 1. 개 관

미국은 아동의 권리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에 관하여 헌법적 권리성 여부나 헌법적합성이 다투어 지는 경우의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권리에 대한 법리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양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에 의해서 보호받는 헌법적 권리로 간주하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아동면접권(Child Visitation Rights)을 허용한 워싱턴주 법<sup>54)</sup>에 대해 위헌 판결<sup>55)</sup>을 내렸었다. 이와 같이 자녀 보호 및 양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enumerated)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자녀 보호 및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헌법적 권리와 사적 자치의 원칙 등으로 국가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아동 보호, 특히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과 법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연방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이나 주에게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속하게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0조

54) Washington Rev. Code §26.10.160(3)

55) *Traxel v. Granville*(99-138), 530 U.S. 57(2000).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9-138.ZO.html> 및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30/57/> 참조

에 따라 아동 보호에 관한 입법 및 행정 권한은 주 의회와 주 정부가 가진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동의 보호와 안전 등에 관한 연방보조금을 주정부에 배분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보조금 배분을 받으려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주는 아동 보호 및 안전의 입법 및 행정에 있어서 연방법과 규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아동보호와 안전 관련 법제의 기본 법률로는 1974년 제정되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P.L. 93-247). “CAPTA”로 약칭한다)<sup>56)</sup>이 있으며,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목표로 하여 가족유지 정책을 구현한 1980년의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L. 96-272). “AACWA”로 약칭한다), 그리고 가족의 유지와 재결합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 재결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아동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한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등의 주요 법률이 있다. 이처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적 실현은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6> 미국 아동보호법제 제정 연혁<sup>57)</sup>

년 도	법 명
1974	-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APTA)(1974)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of 1974, P.L. 93-247)
1978	- 아동학대 방지·조치 및 입양개혁법(1978)

56) U.S. Code title 42, chapter 67

5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2015, 2쪽의 그림표를 재구성 및 재인용.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majorfedlegis.pdf>(2016.10.1. 최종방문)>.

년 도	법 명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Act of 1978, P.L. 95-266) - 인디언아동복지법(1978) (Indian Child Welfare Act (ICWA) of 1978, P.L. 95-608)
1980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P.L. 96-272)
1984	- 아동학대 개정법(1984) (Child Abuse Amendments of 1984, P.L. 98-457)
1988	- 아동학대 방지,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1988) (Child Abuse Prevention,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88, P.L. 100-294)
1992	-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1992)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92, P.L. 102-295)
1993	- 가족유지 및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법(1993) (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Program Act of 1993, P.L. 103-66)
1994	- 다민족 배정법(1994) (Multiethnic Placement Act of 1994, P.L. 103-382)
1996	-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 개정법(1996)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Amendments of 1996, P.L. 104-235)
1997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P.L. 105-89)
1999	- 가정위탁양육 독립법(1999)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P.L. 106-169)

제 4 장 외국의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

년 도	법 명
2000	- 아동학대 방지 및 집행법(2000) (Child Abuse Prevention and Enforcement Act of 2000, P.L.106-177)
2001	- 안전하고 지속적인 가족 증진법 개정법률(2001)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Amendments of 2001, P.L. 107-133)
2003	- 아동 및 가족 안전 유지법(2003)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 P.L. 108-36)
2005	- 공정액세스 가정위탁양육법(2005) (Fair Access Foster Care Act of 2005, P.L. 109-113)
2006	- 안전하고 적절한 주(States)간 가정위탁아동배정법(2006) (Safe and Timely Interstate Placement of Foster Children Act of 2006, P.L. 109-239)  - 아담왈쉬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P.L.109-248)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개선법(2006)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 P.L. 109-288)  - 세금감면 및 건강보호법(2006)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 P.L.109-432)
2008	- 성공적 가정위탁양육 및 입양 증진법(2008)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of 2008, P.L. 110-351)
2010	- CAPTA 재승인법(2010)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 P.L.111-320)

년 도	법 명
	- 환자 보호 및 적정 케어 법(2010, “의료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L. 111-148)
2011	- 아동 및 가족 서비스의 개선 및 혁신법(2011)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nd Innovation Act, P.L. 112-34)
2014	- 성매매 방지 및 가족 강화법 (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Act, P.L. 113-183)
2015	- 인신매매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 (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of 2015 ,P.L. 114-22)

## 2. 아동학대 관련 법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1974년에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APTA)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아동학대 및 방임 대응센터가 설립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입법에 의해 CAPTA의 개정이 이루어 졌고, 그 중에는 1992년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92)」, 1996년의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 개정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mendments of 1996)」, 그리고 2003년의 「아동 및 가족 안전 유지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 등이 있다. 또한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구체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으며, 주

의 관련 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특정 직업군에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방지 및 이와 관련한 조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이 연방과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1974년)

1974년에 제정된 이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 CAPTA)」<sup>58)</sup>은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 대처라는 사회적 요구를 구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연방법이라 할 수 있다. CAPTA는 아동학대의 방지, 발견, 조치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4년 제정당시 CAPTA의 목차 내용은 6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었다.

이 제정법은 “아동학대 및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Sec. 3)<sup>59)</sup> 교육보건복지부내에 “아동 학대 및 방임 대응 국가센터”(the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의 설립을 규정하여, 이 센터로 하여금 ①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연간 통계·조사 현황의 발간 및 분석 등, ②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방지, 발견 및 조치를 위한 성공가능성이 있는 민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소의 유지, ③ 관련 인력 교육

---

58) P. L. 102-295(1974년 1월 31일 제정), 88 STAT. 4. et seq.. At <<https://www.gpo.gov/fdsys/pkg/STATUTE-88/pdf/STATUTE-88-Pg4.pdf> (2016.10.1. 최종 방문)>

59) “For purposes of this Act the term “child abuse and neglect” means the physical or mental injury, sexual abuse, negligent treatment, or maltreatment of a child under the age of eighteen by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child's welfare under circumstances which indicate that the child's health or welfare is harmed or threatened thereby,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Sec. 3)

자료의 발간, ④ 관련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 기관 및 조직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⑤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조사, ⑥ 아동 학대 사건의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Sec. 2).

또한 교육보건복지부장관은, “NCCAN”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방지, 발견 및 조치와 관련한 프로젝트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민·관 기관 등과 계약하고 보조금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조치를 목표로 하는 혁신 프로그램의 지원 및 관련 인력 교육을 위한 기본 보조금 및 시범 보조금의 도입(Sec. 4), 그리고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Sec. 6)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프로그램과 연방 기금에 의한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조정하고 관련 규칙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Sec. 7).

■ 1974년의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의 목차

- Sec. 2 아동 학대 및 방임 대응 국가센터(“NCCAN”)
- Sec. 3 정의
- Sec. 4 시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 Sec. 5 세출 승인
- Sec. 6 아동 학대 및 방임 자문위원회
- Sec. 7 코디네이션

(2)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1992년)<sup>60)</sup>

이 1992년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of 1992)」은 법률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만이 아니라 장애아

60) P. L. 102-295(1992년 5월 28일), 106 STAT. 187 et seq., At  
<<http://uscode.house.gov/statutes/pl/102/295.pdf> (2016.10.2. 최종방문)>

및 위기의 탁아시설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그리고 기존의 가정폭력 및 입양 관련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4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이 법은 법상의 아동학대의 방지 및 조치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확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APTA)」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의 TITLE I(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에서 13개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법 TITLE I(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의 Subtitle B는 아동학대 및 방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학대 및 방임 자문위원회(Sec. 111), 국립 아동 학대 및 방임 센터의 조사 및 지원 활동(Sec. 112), 아동학대 방지 관련 프로그램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Sec. 113),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Sec. 114), 긴급 보조금 프로그램(Sec. 115),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기소 보조금 프로그램(Sec. 116), 그리고 세출승인(Sec. 117)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Sec. 112은 국립아동 학대 및 방임센터의 조사 및 지원활동이 기존과 달리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를 고려하고,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세심한 조사, 행정 그리고 사법 제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아동 학대 및 방임의 관계에 주목할 것을 이 법에서 새로 추가하고 있다.

이 법 TITLE I(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의 Subtitle C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에 대한 보조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주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의 보조금 수급 자격과 보조금 사용 등의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기존의 42 U.S.C. 5116 et seq.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992년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의 목차

TITLE I. 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

Subtitle A. 총 칙

Sec. 101. 개정 대상 범위

Sec. 102. 사실인정

Subtitle B. 일반 프로그램

Sec. 111. 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자문위원회

Sec. 112. 국립 아동 학대 및 방임 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조사 및 지원 활동

Sec. 113. 시범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금

Sec. 114. 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

Sec. 115. 긴급 보조금 프로그램

Sec. 116.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Sec. 117. 세출 승인

Subtitle C. 지역 기반 (아동학대) 방지 보조금

Sec. 121. Title 제목 및 목적

Sec. 122. 승인된 보조금과 세출 승인

Sec. 123. 주의 보조금 수급 자격

Sec. 124. 제한 사항

Subtitle D. 노숙자 가정 또는 노숙자 위협에 처한 가정의 아동에 대한 방지 서비스

Sec. 131. 세출 승인

Subtitle E. 잡 칙

Sec. 141. 기술적 개정

Sec. 142. 자발적 보고 체계에 관한 보고

TITLE II. 장애아동 및 위기의 탁아시설 아동을 위한 임시 아동 보호법(Temporary Child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risis Nurseries Act)

TITLE III. 가족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의 재 인증

TITLE IV. 입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재 인증

(3)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APTA) 개정법(1996년)<sup>61)</sup>

이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Amendments of 1996’”)은 CAPTA와 관련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재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에 입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TITLE I(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의 개정)과 TITLE II(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서는 TITLE I의 아동학대 방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 관련 일반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1년 회계연도까지 세출이 승인되고 있다(Sec. 111).

또한 ‘아동 학대 및 방임’은 최소한 아동의 사망,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위해나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 110).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존의 국립 아동 학대 및 방임 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대신에 아동 학대 및 방임 부서(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sup>62)</sup>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부처내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능과 활동을 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Sec. 101).

장관은 부처 내에 또는 3년 이상의 경쟁계약에 의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 정보 센터(National clearinghouse for information relating to child abuse)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Sec. 104).

61) PUBLIC LAW 104 - 235, OCT. 3, 1996 / 110 STAT. 3063 et seq. . At <<https://www.congress.gov/104/plaws/publ235/PLAW-104publ235.pdf>>

62) DHHS내 아동가족청 산하 아동국(Children's Bureau) 내 설치됨. ‘아동학대 및 방임 부서(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아래에서는 ‘OCAN’이라 약칭한다)’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 평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함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연구는 원인, 예방, 평가, 인지, 치료, 문화 및 사회 경제적 특성, 그리고 아동 학대와 방치의 결과까지도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Sec. 105(1)(B)).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준전문가 및 관계자를 위한 공공 및 비영리 민간 조직의 교육프로그램,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가족 강화 수단으로서 전국적인 상호 지원 및 자조 프로그램, 기타 친족 돌봄과 같은 혁신적 프로그램을 유지 및 창설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Sec. 106)

장관은 각 주정부의 아동 보호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요청하는 주정부에게 18세 미만 아동인구에 기초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부금을 지급하며(Sec. 107 (a)),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주정부는 최초의 보조금을 신청할 때와 그 이후는 5년마다 아동보호 서비스 시스템의 영역을 특정하는 주 계획서(State Plan)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주 계획은 아동복지와 가족 보존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의 title IV 의 part B의 주정부 계획(State plan)과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조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 107 (b)).

또한 보조금이 교부되는 주정부는 시민심사패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각 패널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특정 사례를 검토하여 주정부 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녀 보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Sec. 107 (c)).

■ 1996년의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법(CAPTA) 개정법」의 목차

TITLE I-아동 학대 방지 및 조치법의 개정

Sec. 100. 사실인정

Subtitle A- 일반 프로그램

- Sec. 101. 아동 학대 및 방임 부서(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 Sec. 102. 아동 학대 및 방임 자문위원회
- Sec. 103. 기관간 아동 학대 및 방임 TF의 폐지
- Sec. 104. 아동 학대 관련 정보 센터(National clearinghouse for information relating to child abuse)
- Sec. 105. 연구, 평가 및 지원 활동
- Sec. 106. 시범 프로그램 보조금
- Sec. 107. 주의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 Sec. 108. 삭제\*
- Sec. 109. 기타 사항
- Sec. 110. 정의
- Sec. 111. 세출 승인
- Sec. 112. 조문 추가 편제
- Sec. 113. 기술적 개정

Subtitle B- 지역 사회 기반 가족 재원 및 지원 보조금

- Sec. 121. 프로그램의 수립

Subtitle C- 노숙자 가정 또는 노숙 위험에 처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특정 예방 서비스

- Sec. 131. title III의 삭제\*\*

Subtitle D- 잡 칩

- Sec. 141. 목차
- Sec. 142. 다른 법률의 폐지\*\*\*

TITLE II - 다른 법률의 개정

Subtitle A- 가족 폭력 예방 및 서비스 법

- Sec. 201. 주의 시범 보조금
- Sec. 202. 할당
- Sec. 203. 세출 승인

Subtitle B- 1978년 아동학대 방지 및 조치 그리고 입양 개혁

법(“입양기회법”)

Sec. 211. 사실 인정 및 목적

Sec. 212. 정보 및 서비스

Sec. 213. 세출 승인

Subtitle C- 유기영아지원법(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Sec. 221. (보조금)우선권 요건

Sec. 222. 재 승인

Subtitle D- 다양한 프로그램의 재인증

Sec. 231. 실종 아동 지원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

Sec. 232. 1990년의 아동 학대 피해자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of 1990)

\*Section 108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42 U.S.C. 5106b)

\*\*Title III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42 U.S.C. 5118 et seq.)

\*\*\*① The Temporary Child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risis Nurseries Act of 1986(42 U.S.C. 5117 et seq.)과 ② FAMILY SUPPORT ENTERS. –Subtitle F of title VII of the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42 U.S.C. 11481 et seq.)

(4) 주의 아동학대 신고법<sup>63)</sup>

미국은 모든 주정부와 Washington D.C. 그리고 기타 미국령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거나 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 입법방식으로는 신고의무를 특정 직업군 종사자나 기관에 부과하거나, 특정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직업군 규정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64)</sup>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갖는 전문 직업군의 범주에는 “사회 복지사, 교사, 교장 및 기타 학교 직원, 의사, 간호사 및 기타

63)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2015.8. <at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manda.pdf>(2016년 9월 20일 최종 접속). 이를 요약 정리하여 인용함.

64) 앞글, 2~3쪽 참고.

의료 종사자, 카운슬러, 치료사 및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 육아 서비스 제공자, 의료 심사관 또는 검사관, 그리고 법 집행관”<sup>65)</sup> 이 포함되고 있으며, 나아가 “성직자”도 포함되기도<sup>66)</sup> 한다.

미국의 18개 주<sup>67)</sup>는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중 뉴저지와 와이오밍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주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68)</sup>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이외에 기관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33개 주법<sup>69)</sup>이 채택하고 있다. 기관의 직원 또는 자

---

65) 앞글, 2쪽 재인용.

66)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업군으로 성직자를 규정하고 있는 주법을 가진 주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알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주 뉴 멕시코,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 있다. hildwelfare Imformation Gateway, “Clergy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2015.8. <at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clergymandated.pdf>(2016년 9월 20일 최종 접속>. 1쪽 주2 재인용.

67) 2015년 8월 기준으로 뉴저지, 와이오밍, 델라웨어,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터키, 메릴랜드,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유타가 포함됨. Childwelfare Imformation Gateway,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2015.8. <at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manda.pdf>(2016년 9월 20일 최종 접속>. 2쪽 각주9 재인용.

68) 앞글, 2쪽 요약 인용.

69)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서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와이오밍 이다. 앞글, 3쪽, 주10 재인용.

원봉사자가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목적의 아동학대 위험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0)</sup>

### 3. 가정위탁 법제

#### (1) 연방법

미국은 요보호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 방식이 아동의 안전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전문가가 선정한 안전한 위탁가정에 의한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sup>71)</sup>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Title IV(GRANTS TO STATES FOR AID TO DEPENDENT CHILDREN APPROPRIATION)의 part B와 part E<sup>72)</sup>에 의거하여 이를 수정 보완해 가는 입법 내용을 갖는다.

앞 <표 16>에서 열거되어 있는 법률 중에서 가정위탁과 관련한 개별 연방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1999년의 「가정위탁양육 독립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sup>73)</sup>은 아동이 위탁 양육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더 많은 기금과 융통성을 주장

70) 앞글, 3쪽 요약 인용.

71) Alfred Kadushin,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1974, 401쪽 참고.

72) 이는 현행 U.S. Code Title 42, Chapter 7(SOCIAL SECURITY), Subchapter IV(GRANTS TO STATES FOR AID AND SERVICES TO NEEDY FAMILIES WITH CHILDREN AND FOR CHILD-WELFARE SERVICES)의 PART B(Child and Family Services (§§ 620 to 629m))와 PART E(Federal Payments for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 670 to 679c))에 해당한다.

73) P.L.106-169(1999년 12월 12일 제정), 113 STAT. 1822 et seq.

부에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법」 title IV의 part E를 개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주정부가 가정위탁양육이 만료되는 청소년의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양육아동 및 가정위탁양육이 끝난 18세에서 21세의 청년에게 독립생활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유용하도록 기금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주정부에 인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고등학교 학위 취득, 직업훈련, 일상생활기법 훈련, 회계 및 금융 관리 기법훈련, 아동학대방지 교육, 음주·흡연 등의 건강 예방 활동 등이 포함되며, 가정위탁양육이 끝난 18세에서 21세의 청년에게는 재정, 주거, 자문, 고용, 교육, 기타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된다(sec. 101). 나아가 가정양육위탁이 만료된 18세에서 21세의 청소년에게 의료부조(Medicaid) 자격요건 확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sec.121), 입양 인센티브 기금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sec. 131).

2005년의 「공정액세스 가정위탁양육법」(Fair Access Foster Care Act of 2005)<sup>74)</sup>은 민간영리기관에 위탁양육 유지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법 Title IV의 E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EC. 2).

다음, 2006년의 「안전하고 적절한 주(States)간 가정위탁아동배정법」(Safe and Timely Interstate Placement of Foster Children Act of 2006)<sup>75)</sup>이 있다. 이법은 아동 보호를 개선하고 주 경계를 넘어 아동의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배치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등의 목적을 갖는다. 사회보장법 title IV-E상의 위탁양육 및 입양지원을 위한 주정부계획은 아동의 질서 정연하고 시기적절한 주간 배치를 위한 효과적 절차를 갖추고(Sec.3), 아동이 배치될 가정 상황에 대한 조사를 특정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야 하며, 장관은 주간 가정 조사를 회계연도 내에 수행하는 주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Sec.4).

74) P.L. 109-113(2005년 11월 22일 제정), 119 STAT. 2371

75) P.L. 109-239(2006년 7월 3일 제정), 120 STAT. 508 et seq.

그리고 2008년의 「성공적 가정위탁양육 및 입양 증진법」(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of 2008)<sup>76)</sup>이 있다. 이 법은 친족 양육을 연결하고 지원하고(Title I), 위탁양육 아동을 위한 성과를 개선하고(TITLE II), 「사회보장법」 IV-E funds에 대한 (인디언)부족 위탁 양육 및 입양의 접근을 제공하고(TITLE III), 입양 인센티브를 향상(TITLE IV)시키는 등의 목적을 위해 「사회보장법」 Title IV의 B와 E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sup>77)</sup> 이에 따라 주정부가 가정위탁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영구적인 보살핌을 해음으로써 아동의 법적 후견인으로 추정되어 온 아동의 조부모와 친족에게 친족 후견인보조금(kinship guardianship assistance payments)을 옵션으로 제공하거나(Title I, Sec. 101), 특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또는 피후견아동을 18세 이후에도 배려하는 조치를 옵션으로 제공(Title II, Sec. 201)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SSA) title IV의 part E(위탁양육 및 입양 보조를 위한 연방정부보조금)를 개정하며, 또한 주정부의 위탁양육 명령만료 후 아동의 전환 계획((Title I, Sec. 202)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족 재연결을 돕는 공적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매칭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법(SSA) title IV의 part B(아동 및 가족 서비스)를 개정하는 것(Title I, Sec. 201) 등을 내용으로 한다.<sup>78)</sup>

## (2) 캘리포니아 주법

캘리포니아 주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가정위탁양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갖는 위탁양육 아동의 평등권 보장 및 연방정부 지원에 대한 메칭펀드 운영, 형제·자매의 동일 위탁가정 배정 및 미성년자 부모와 그 자녀의 동일

76) P.L. 110-351(2008년 10월 7일 제정), 122 STAT. 3949 et seq.

77) 122 STAT. 3949

78)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bill/6893>, 일부발취 요약함. (최종 방문 2016년 9월 23일)

위탁가정 배정 등 다양한 내용의 가정위탁양육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가정위탁양육 관련 캘리포니아 법률 및 주요 내용<sup>79)</sup>

캘리포니아 법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458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Chapter 331, Statutes of 20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양육 아동에게 인종, 민족적 정체성, 조상, 국적, 종교, 성적 정체성,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HIV 감염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서비스 접근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 1612 매칭 연방펀드 (Chapter 845, Statutes of 20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 주의 각 카운티들은 부양아동가족보호조-위탁양육(the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AFDC-FC)프로그램에 따라 위탁양육을 받고 아동을 대신해서 위탁양육 제공자에게 위탁양육급여를 지급</li> <li>- AFDC-FC는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 펀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정부 일반 예산(the General Fund)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주정부의 AFDC-FC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됨</li> <li>- 위탁양육을 재정 지원하는 지방(county) 정부에게 위탁부모의 연방 위탁양육 매칭펀드 사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1633 위탁양육 아동 : 사회보장보조 (고등학교) (Chapter 641, Statutes of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 복지부로 하여금 지방정부(county) 복지부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거주하는, 사회보장혜택과 보충적인 사회보장수입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실행 지침을 세우도록 함</li> <li>- 고등학교 학력 인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동안에는 18세의 위탁보호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위탁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을 허용</li> </ul>

79) “California Foster Care Legislation”, available at <http://www.newwaystowork.org/documents/ytatdocuments/FYCDE6CAFosterCareLegResources.pdf> (최종방문 2016년 10월 10일). 이 자료의 일부를 발췌 번역하여 재인용.

캘리포니아 법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 1178 위탁 양육대상 십대부모 (Chapter 841, Statutes of 20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와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 500 AFDC - FC : 자녀를 둔 위탁양육 청소년 (Chapter 630, Statutes of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위탁을 받고 있는 십대 부모가 위탁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함</li> <li>- 위탁양육자에게 십대 부모와 그들의 자녀 모두의 위탁양육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자녀지원비 (\$200)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519 친권 (Chapter 634, Statutes of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양육을 받는 청소년은, 법적 친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가정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면, 위탁양육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산상속, 사회보장 수급 및 기타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 436 위탁양육 : 임시 주거 (Chapter 629, Statutes of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위탁보호 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용 가능한 주거 시설을 증가시키도록 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2488 위탁청소년 형제·자매 연결 (Chapter 386, Statutes of 20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양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형제·자매와 연락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양으로 헤어지는 형제·자매가 서로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동의’ 가능한 연령을 낮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 2195 친척 가정 위탁 (Chapter 383, Statutes of 20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가정 위탁자가(primary foster caregiver)가 갑자기 양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 아동을 친척 혹은 기타 가족들에게 가정 위탁하도록 함. 이를 위해 비상시에 친척 양육제공자를 평가하고 승인하는 지방정부의 절차 및 기준을 세움</li> </ul>

## 4. 입양 관련 법제

### (1)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년)<sup>80)</sup>

이 1980년의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AACWA)은 입양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피부양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 사회 서비스 및 피부양 아동 프로그램을 갖춘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Title IV(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 및 아동 복지 서비스 보조)을 개정하여 주정부 계획이 「사회보장법」 title IV에 의거한 아동 입양 및 위탁양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회계연도 세출 권한을 승인하고 있다(Sec. 101(a)1).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보조금의 지급자격을 갖기 위해서 주정부는 보건, 교육 및 복지 장관이 승인한 주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주 계획에는 ①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사회보장법」 title IV의 part B)을 관리하는 주정부기관이 이 법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② 이 법과 「사회보장법」 title IV의 part B에 의거하여 설립된 프로그램에 일정기간마다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③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되지 않게 하고 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을 기울일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sup>81)</sup>

---

80)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PUBLIC LAW 96-272(1980년 6월 17일 제정), 94 STAT. 500 et seq.

81) <https://www.congress.gov/bill/96th-congress/house-bill/3434>. 요약 인용함.  
(최종방문 2016년 9월 23일)

■ 1980년의 「입양 부조 및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차

Title I 가정 위탁(foster care)과 입양 지원

Sec. 101 가정위탁과 입양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

Sec. 102 가정위탁을 지원한 피부양 아동을 위한 연방 보조금

Sec. 103 아동복지 서비스

Title II 사회 복지 (Social Service)

Title III 기타 사회보장법 규정(SOCIAL SECURITY ACT PROVISIONS)

(2)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1997년)<sup>82)</sup>

1997년의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은 위탁 양육의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법」의 title IV-E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5개의 Title로 구성되며, Title I은 가정위탁양육 및 입양 배정을 위한 합당한 노력과 안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 요건을 명확화 하고(Sec. 101), 모든 사례별 계획 및 사례 검토 절차에 “아동의 안전”(safety of the child)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Sec. 102), 가정위탁양육중인 특정 아동에 대하여 친권자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중죄의 폭행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친권상실절차의 개최 또는 참여를 요구하며(Sec. 103), 심의 및 청문의 통지(Sec. 104),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연방 부모 식별 탐사 서비스의 이용(Sec. 105), 예비 가정위탁양육 및 입양 부모에 대한 범죄기록 체크(Sec. 106), 아동이 영주할 가정의 탐사 또는 입양 노력에 관한 문서화 요구(Sec. 107)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Title II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양 인센티브 보조금(Sec. 201), 아동이

82) P. L. 105-89(NOV. 19, 1997년 11월 19일 제정), 111 STAT. 2115 et seq..

거주하는 지역에 입양해 주기(Sec. 202), 그리고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성과의 개발, 관리, 확산을 위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에 기반으로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발전을 규정하고(Sec. 203) 있다.

Title III은 기타 아동보호를 추가 개선 및 개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보호 시범 프로젝트를 더 많이 확대하고(Sec. 301), 아동에 대한 친족 돌봄(Kinship care)을 규정하고(Sec. 303), 독립적인 생활 서비스 적격자를 명확히 하고(Sec. 304), 가족 유지 및 지원 서비스의 재 승인 및 확대(Sec. 305), 특지원 아동을 위한 건강 보험(Sec. 306), 특별지원아동을 위한 입양보조금수급 자격의 지속적 인정(Sec. 306), 가정위탁양육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는 기준(Sec. 308)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5. 친권상실 관련 법제

### (1) 연방법

위에서 기술한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은 친권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우선 가족의 유지와 가족재결합을 위한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SEC. 101(a)(B)). 그러나 법원이, ① 부모가 아동을 “더 악화된 상황(aggravated circumstances cases. 주법에 정의되는 바와 같이, 포기, 고문, 만성 남용 및 성적 학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101(a)(D)(i))”에 처하게 했다고 결정하거나, 그리고 ② 부모의 다른 자녀(child)를 살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이러한 살인이나 고의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도왔거나, 시도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부모의 자녀나 또 다른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중범을 범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정부가 가족의 유지와 가족재결합을 위한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SEC.101(a)(D)).

“합당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법원이 인정한 앞에서 기술한 SEC.101(a)(D)의 사유에 추가하여, ① 가장 최근 22개월 중 15 개월 동안 주정부의 책임하에 위탁 양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이거나, 또는 ② 관할 법원이 아동을 “포기한 영아”(“abandoned infants”. 주법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로 판정한 경우에는 주정부는 자녀의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한 청원 절차를 개시하고,<sup>83)</sup> 동시에 아동에게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친권상실의 일반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① 주의 옵션으로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② 친권상실 청원이 아동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문서로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③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부가 아동의 안전한 가정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의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상실 청원을 할 수 없는 친권상실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SEC. 103(a)(3)).

## (2) 주 법률

미국의 모든 주가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법적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강제적 친권상실(involuntary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적 친권상실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주는 법원이 ① ‘명백하고 확실한(clear and convincing)’ 증거로써 부모의 부적격성을 결정할 것과, ② 친자관계의 단절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child's best interest)’인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84)</sup>

83)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아동학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권 제1호, 2009, 12쪽.

84) Children's Bureau, Grounds for Involuntary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DHHS), 2쪽. <available at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groundtermin.pdf>> (최종방문 2016. 10.15), 2쪽.

부모의 부적격을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 요건은 심한 학대 혹은 방임(Severe or chronic abuse or neglect), 성적 학대(Sexual abuse), 포기(Abandonment of the child), 부모의 장기적인 정신 지체 또는 박약, 알코올 혹은 약물 장기 중독으로 인한 부모의 무능력, 자녀와의 소통 실패, 다른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 또는 학대나 방임 등이 있다.<sup>85)</sup>

또한 뉴욕, 뉴저지, 네바다를 포함하는 32개 주는 친권 상실의 법적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친권상실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sup>86)</sup> 이는 앞에서 기술한 친권관련 「입양 및 안전가족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이 규정하는 친권상실의 예외사항이 많은 주법에서도 그대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ASFA, SEC. 103(a)(3)). 따라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6. 소 결

미국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그리고 영구적 가정입양 제도를 거쳐 왔다. 나아가 위협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아동분리 정책 이외에 원가정으로 아동을 복귀시켜 원가정에서의 아동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유지(family preservation) 및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 보호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성은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

85) 앞글, 2쪽.

86) 앞글, 4쪽 참조 및 32개주의 명단은 4쪽 주8 재인용. 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주는 알라바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이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메서츠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와이오밍이다.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복지재정 축소로 인해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고 아동학대나 방임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분야로 지원정책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어 버렸었지만 지역사회가 아동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할을 수행한 결과 아동복지의 대상이 일반아동으로 확대되는 보편주의적 아동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일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지향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 서비스의 대상은 아동복지 대상으로 이해되어 아동보호체계의 범위와 정책이 확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가정내 아동 훈육으로서 “합리적” 체벌을 인정한다. 아동인권협약은 가정내 체벌까지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동인권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 제 2 절 일 본

### 1. 개 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 법률로 1947년 「아동복지법」<sup>87)</sup>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 「아동권리조약」<sup>88)</sup>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특별법으로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sup>89)</sup>으로 분법되

87) 児童福祉法(제정 1947년 12월 12일 법률제164호, 최종개정 2016년 6월 3일 법률제65호)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95%9f%8e%83%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16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95%9f%8e%83%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16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88)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http://www.mofa.go.jp/mofaj/gaiko/jido/zenbun.html>>.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됨.

89)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제정 2000년 法律 第82号, 최종개정)

었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친권정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2. 법제현황

### (1) 아동복지법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그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 6월 3일 법률 제63호로 개정되었다.

#### 1) 1947년 제정법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아동상담소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가정법원의 승인을 얻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며(제28조), 도도부현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나 보육원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제29조), 아동상담소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33조).

#### 2) 2011년 개정법률

「아동복지법」은 친권정지 및 관리권상실의 심판 등에 대하여 아동상담소장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시설장 등이 아동의 감호 등에 관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은 그 조치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b%73%91%d2%82%cc%96%68%8e%7e%93%99%82%c9%8a%d6%82%b7%82%e9%96%40%97%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 E=2&H\\_NO\\_NO=&H\\_FILE\\_NAME=H12HO082&H\\_RYAKU=1&H\\_CTG=1&H\\_YOMI\\_G UN=1&H\\_CTG\\_GUN=1](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b%73%91%d2%82%cc%96%68%8e%7e%93%99%82%c9%8a%d6%82%b7%82%e9%96%40%97%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 E=2&H_NO_NO=&H_FILE_NAME=H12HO082&H_RYAKU=1&H_CTG=1&H_YOMI_G UN=1&H_CTG_GUN=1)>

가정위탁 중이거나 또는 일시보호 중의 아동에게 친권자 등이 없는 경우의 아동상담소장의 친권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 3) 현행 법률<sup>90)</sup>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모든 아동은 아동 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생활을 보장받고, 사랑받고 보호되며, 그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나아가 자립을 도모 할 수 있는 등의 복지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의견이 존중되고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제2조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며(동조제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심신이 건강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러한 아동의 권리, 국민의 노력의무, 보호자의 책임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며, 이 원리는 모든 아동 관련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세 미만의 영아(乳兒),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유아(幼兒), 초등학교 취학시기부터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년으로 구분된다(제4조제1항).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이 가정에서 심신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

90) 최종개정 : 2016년 6월 3일 법률 제65호

과 그 보호자의 심신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이 가정의 양육 환경과 유사한 양육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을 가정 및 당해 양육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이 최대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조의2).

「아동복지법」은 총 8개의 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복지의 보장(제19조~제34조의2), 제3장 사업, 양육 위탁 및 시설(제34조의3~제49조), 제4장 비용(제49조의2~제56조의5), 제5장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의 아동 복지법 관계 업무(제56조의2~제56조의5의4), 제6장 심사 청구(제56조의5의5), 제7장 잡칙(제56조의6~제59조의8), 제8장 벌칙(제60조~제62조의7),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조문목차는 다음과 같다.

<p>제 1 장 총칙(제1조~제3조)</p> <p>제 1 절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제3조의2·제3조의3)</p> <p>제 2 절 정의(제4조~제7조)</p> <p>제 3 절 아동복지심의회 등(제8조·제9조)</p> <p>제 4 절 실시기관(제10조~제12조의6)</p> <p>제 5 절 아동복지사(제16조~제18조의3)</p> <p>제 6 절 아동위원(제18조의4~제18조의24조)</p> <p>제 2 장 복지의 보장(제19조~제34조의2)</p> <p>제 1 절 치료교육(療育)의 지도,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등</p> <p>제 1 관 치료교육의 지도(제19조)</p> <p>제 2 관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p> <p>제 1 목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제19조의2~제19조의8)</p> <p>제 2 목 지정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기관(제19조의9~제19조의21)</p> <p>제 3 목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 사업(제19조의22)</p> <p>제 3 관 료육의 급부(제20조~제21조의3)</p> <p>제 4 관 잡 칙(제21조의4·제21조의5)</p> <p>제 2 절 주택생활 지원</p>
---

제 1 관	장애아동통원 급부비, 특례장애아동통원 급부비 및 고액장애아동 통원 급부비의 지급(제21조의5의2 ~ 제21조의5의14)
제 2 관	지정장애아동통원 지원 사업자(제21조의5의15 ~ 제21조의5의24)
제 3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제21조의5의25 ~ 제21조의5의27)
제 4 관	지체부자유아동 통원의료비의 지급(제21조의5의28 ~ 제21조의5의31)
제 5 관	장애아동통원지원 및 장애복지서비스의 조치(제21조의5의6 · 제21조의7)
제 6 관	육아지원사업(제21조의8 ~ 제21조의17)
제 3 절	조산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및 탁아소 입소 등(제22조 ~ 제24조)
제 4 절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아동 식비 등 급부비 및 장애아동입소의료비의 지급
제 1 관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 아동식비 등 급부비의 지급(제24조의2 ~ 제24조의8)
제 2 관	지정장애아동입소시설 등(제24조의9 ~ 제24조의19)
제 3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제24조의19의2)
제 4 관	장애아동입소의료비의 지급(제24조의20 ~ 제24조의23)
제 5 관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 아동식비 등 급부비 및 장애아동입소의료비의 지급 특례(제24조의24)
제 5 절	장애아동상담지원 급부비 및 특례장애아동상담지원 급부비의 지급
제 1 관	장애아동상담지원 급부비 및 특례장애아동상담지원 급부비의 지급 (제24조의25 ~ 제24조의27)
제 2 관	지정장애아동상담지원 사업자(제24조의28 ~ 제24조의37)
제 3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제24조의38 ~ 제24조의40)
제 6 절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등(제25조 ~ 제33의9의2)
제 7 절	피조치아동 등 학대의 방지 등(제33조10 ~ 제33조의17)
제 8 절	잡칙(제34조 · 제34조의2)
제 3 장	사업, 양육 위탁 및 시설(제34조의3 ~ 제49조)
제 4 장	비용(제49조의2 ~ 제56조의5)
제 5 장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의 아동복지법 관계 업무(제56조의2 ~ 제56조의5의4)
제 6 장	심사 청구(제56조5의5)
제 7 장	잡칙(제56조의6 ~ 제59조의8)
제 8 장	벌칙(제60조 ~ 제62조의7)
	부칙

## (2)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sup>91)</sup>이 제정되었다. 이 「아동학대방지법」은 2004년 1차 개정, 2008년 2차 개정, 그리고 이후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 내용이 강화되었다.<sup>92)</sup>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6.6.3.(법률제63호)이다.

### 1) 2000년 제정법률<sup>93)</sup>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학대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및 심리적 학대로 분류함(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의 책무를 정함(제4조).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제5조)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6조)를 정함.
- 출입검사(제9조), 경찰관 지원(제10조), 아동학대 보호자의 지도(제11조), 아동학대에 이르는 잘못된 친권행사에 대한 친권자 책임(제14조) 등을 규정함.
- 기타 부칙으로 이 법률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정함.

91)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2000年 法律 第82号)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b%73%91%d2%82%cc%96%68%8e%7e%93%99%82%c9%8a%d6%82%b7%82%e9%96%40%97%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H12HO08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b%73%91%d2%82%cc%96%68%8e%7e%93%99%82%c9%8a%d6%82%b7%82%e9%96%40%97%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H12HO08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92)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児童虐待防止全国ネットワーク, ‘児童虐待防止法制度(아동학대방지법 제도)’, <<http://www.orangeribbon.jp/about/child/institution.php>>

93) 2000年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法律 第82号)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47082.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47082.htm)>

2) 2004년 개정법률<sup>94)</sup>

- 목적규정에 ‘아동학대는 현저한 인권침해’임을 명기함(제1조).
- 아동학대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동거인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학대도 학대사항에 포함함(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제4조).
-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예상되는 아동까지 신고의무 대상자로 포함함(제6조).
- 경찰서장에 대한 지원요청(제10조), 면회 및 통신제한규정 정비(제12조),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제13조) 등을 개정함.
- 기타 부칙으로 이 법률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3년 후 재검토하도록 정함.

3) 2008년 개정법률<sup>95)</sup>

- 목적규정에 ‘아동의 권리의익 옹호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명기함(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의료제공체제의 정비’를 추가함(제4조).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출입검사에 있어서 아동상담소의 권한을 강화함.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제출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아동을 위해 아동상담소장은 보호자에 대한 면접과 통신제한을 강화할 수 있음(제12조).

---

94) 2004년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律 第30号)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414030.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414030.htm)>

95) 2007년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及び児童福祉法の一部を改正 (法律 第73号)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6620070601073.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6620070601073.htm)>

#### 4) 현행 법률

##### 가. 목적

이 법률은 아동 학대가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과 함께 일본의 미래 세대 육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 학대 금지, 아동 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기타 아동 학대의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따라서 아동의 권익 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친권을 행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기타의 사람으로,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감호하는 아동(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게 다음의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아동의 몸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② 어린이를 성희롱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행위를 하게 하는 것.
- ③ 학생의 심신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현저한 감식 또는 장시간 방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의 전2호 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의 방치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 ④ 아동에 대한 현저한 욕설 또는 현저하게 거부적인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것 및 이

에 준하는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한다) 기타 아동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것

다. 친권의 행사에 대한 배려 등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민법」 제820조의 규정에서 의한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당 아동을 징계해서는 아니되며, 당해 아동의 친권의 적절한 행사를 배려하여야 하며(제14조제1항), 아동의 친권자는 아동 학대에 관한 폭행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자임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제14조제2항).

라. 친권상실 제도의 적절한 운용

민법의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방지 및 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제15조)

「아동학대방지법」의 조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아동 학대의 정의)
제 3 조 (아동 학대의 금지)
제 4 조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등)
제 5 조 (아동 학대의 조기 발견 등)
제 6 조 (아동 학대에 관한 통보)
제 7 조
제 8 조 (통고 또는 송치를 받은 경우의 조치)
제 8 조의2 (출석 요구 등)
제 9 조 (출입 조사 등)
제 9 조의2 (재출두 요구 등)
제 9 조의3 (임검, 수색 등)
제 9 조의4 (임검 또는 수색의 야간 집행의 제한)

제 9 조의5 (허가장의 제시)  
제 9 조의6 (신분의 증명)  
제 9 조의7 (임검 또는 수색시 필요한 처분)  
제 9 조의8 (임검시 출입 금지)  
제 9 조의9 (책임자 등의 입회)  
제10조 (경찰서장에 대한 지원 요청 등)  
제10조의2 (조서)  
제10조의3세 (도도부현지사예의 보고)  
제10조의44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10조의5 (심사 청구의 제한)  
제10조의6 (행정 사건 소송의 제한)  
제11조 (아동학대 보호자에 대한지도 등)  
제12조 (면회 등의 제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3조 (시설 입소 등의 조치의 해제)  
제13조의2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제13조의4 (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에 보고)  
제14조 (친권의 행사에 관한 배려 등)  
제15조 (친권상실 제도의 적절한 운용)  
제16조 (대도시 등의 특례)  
제17조 (별칙)

### (3) 민 법

#### 1) 개 관

일본 「민법」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친권상실제도(제834조)와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관리권상실제도(제835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일정한 기간동안 친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나 관리권상실제도에외에 친권일부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5월 25일의 개정 민법(법률 제53호)은 친권을 제한하면서도 부모와의 단절이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이내의 기간안에서의 친권의 일시정지제도의 도입과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1년 「민법」개정법률<sup>96)</sup>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친권정지제도를 신설했다.

2011년 개정「민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7)</sup>

- 아동학대의 방지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친권 정지제도를 신설함(제834조의2).<sup>98)</sup>
- 친권 상실의 청구권자로 기존의 아동의 친족과 검찰뿐만 아니라 아동,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로 명기함(제834조, 제834조의2, 제835조).
- 그밖에 아동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아동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감호 및 교육권을 가지며 의무를 부담함을 명기함(제820조, 제822조).

## 2) 친권상실

부 또는 모의 학대 또는 악의의 유기가 있을 때,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여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아동 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친

96) 2011.5.25. 법률제53호

97) 2007年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及び児童福祉法の一部を改正 (法律 第73号)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6620070601073.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6620070601073.htm)>

98) 이에 대해서는 佐野文規, ‘児童虐待防止のための親権制度の見直し - 親権停止制度の新設、未成年後見制度等の見直し等-’, 『時の法令』 2012년 2월 28号(第1900号) 참조.

권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그 원인이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4조).

### 3) 친권정지

부 또는 모의 친권행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 그 친족, 미성년 후견인, 아동 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정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친권정지심판을 한 때 그 원인이 소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자녀의 심신상태 및 생활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하는 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34조의2).

### 3) 관리권한상실

부 또는 모의 관리권한 행사가 곤란하거나 또는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 그 친족, 미성년 후견인, 아동 후견감독인 또는 감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관리권한 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제835조).

### 4) 친권 또는 관리권한의 표기 및 복구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친권 또는 관리 권한을 포기할 수 있으며, 친권 또는 관리권한을 복구할 수도 있다(제837조).

## 3. 소 결

일본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1947년부터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점증하여 사회적으

로 많은 반향을 불러왔던 바, 이러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법률인 「아동학대방지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상실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고(동법 제15조), 그 이후 2011년 민법개정법률에서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되 친권자와의 단절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서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목적의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유형을 적시하고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법의 성격을 갖는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의 관련법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제 5 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 1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방안

#### 1.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관련 개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의는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1호). 그런데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규정에서 이에 해당되는 자는 ‘영아’, ‘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 등이 속한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9세 이후부터는 「청소년기본법」등의 적용연령에 속하게 되어 「아동복지법」등과 「청소년기본법」등의 정책대상이 되어 중복적인 규제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아동관련 법령과 청소년관련 법령의 대상연령 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중첩되는 연령대에서는 양쪽 법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제1조). 법상 성년이 된 자를 제외한 18세미만의 자를 협약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에서 법의 적용대상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를 영아(만 1세 미만), 의 유아(만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소년(초등학교 취학시기부터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1항). 또한 일본의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sup>99)</sup>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은 18세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

## 2.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필요

아동학대에 관한 별도 법률로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인 기존의 「아동복지법」이나 「가족폭력특례법」의 아동학대 관련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규정을 떼내어서 ‘(가칭)아동학대방지법’으로 이관하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sup>100)</sup>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나누어 입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i)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ii)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iii)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iv)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v)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의 범위로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의 예방

99) 정식명칭은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이며, 2013년 6월 18일 법률 제79호로 제정되었다.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f%ad%94%4e&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H20HO079&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f%ad%94%4e&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H20HO079&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100) 최영진,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5년 10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367-368쪽.

및 방지에 관한 아래의 목차 규정을 참조하여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의 내용으로 포섭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 보호조치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 금지행위

제18조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5조 삭제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 삭제

제27조의2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 사후관리 등

제28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sup>101)</sup>의 내용도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안 작성에 참고가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시장의 책무
-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 제8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제9조 실태조사
- 제10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 제12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101) 서울특별시조례 제6158호, 2016.3.24., 제정(시행 2016.3.24.)

## 제 2 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구체화

주지하다시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동법 제3조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은 법 적용대상인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 정의를 따르도록 함으로써(동법 제2조제3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아동학대사례로서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 아동을 매대하는 행위,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⑦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⑧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동법 제17조).

이처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아동학대에 속하는 행위의 금지유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금지행위유형이 많고, 이로 인하여 금지행위유형간의 개념 구별이 용이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설정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현실에서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발생 사례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주를 넓히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으며<sup>102)</sup>, 이는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행위유형의 구체화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 학대: 때리기, 차기, 던지기, 세계 흔들기, 화상 입히기, 허약하게 만들기, 목 조르기, 끈 등으로 묶어 방에 가두기 등
  - ② 성적 학대: 어린이에 대한 성적행위, 성적행위를 보여주기,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기, 포르노 피사체로 삼기 등
  - ③ 방치: 집에 가두기, 식사를 주지 않기, 매우 불결하게 하기, 자동차 안에 방치하기, 심한 병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기 등
  - ④ 심리적 학대: 언어에 의한 협박, 무시, 형제간 차별, 아이 앞에서 가족에게 폭력 행사 등

102)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about.html](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about.html)  
(최종방문 2016년 10월 5일)

##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벌의 금지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동을 보호 또는 양육하는 자가 아동에 대한 훈육의 한 방법이나 징계의 방법으로 행사되어 왔다. 그러나 훈육, 징계, 그리고 학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체벌의 필요성 및 체벌의 금지를 놓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변화가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제1항)고 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지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1조 제8항)라고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 법규정 이전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는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이고 간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5조제2항)고 규정하여 일견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제9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915조)고 규정하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경우에 직접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을 것이나, 「민법」에서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 혼육 등의 성격인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실제에 있어서 체벌이 혼육에 해당하는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체벌이 혼육인지 학대인지와 관계없이 체벌자체가 아동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체벌을 금지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협약당사국이기도 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는 근거로 인용되면서 협약당사국은 아동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을 혼육하는 경우 「민법」 제820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당 아동을 징계해서는 아니되며, 당해 아동에 대한 친권의 적절한 행사를 배려하여야 ”(제14조제1항)하며, “아동의 친권자는 아동 학대에 관한 폭행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자임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제14조제2항)고 규정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친권자의 징계행위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여 면책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체벌이 징계권을 이유로 위법성이 면책되지 않도록 관련 민법의 규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18> 민법 제915조(징계권)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다만,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함에 있어 아동학대에 관한 폭행, 상해, 그 외의 범죄에 관하여 친권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u>

### 제 3 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 1. 친권 조항의 관련법체계상 개선방안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 관련 조항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입양특례법」 등에 산재해있으며, 친권 제한 등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나 청구권자 등의 규정도 차이가 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기본법인 「민법」에 친권 관련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친권 관련 개념과 적용 등에 법체계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에서는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으로 규정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제47조제1항제9호)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이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또 「민법」에는 ‘친권의 일부제한’(제924조의2)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동학대의 처벌법」에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제47조 제1항제7호)으로 표현하여 같은 개념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민법」의 ‘친권의 일부제한’은 친권의 일부 상실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한’보다는 친권의 일부 박탈의 개념이어서 「민법」의 용어 표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친권의 정지’는 양 법에서 표현은 같은데, 정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 2. 친권상실 등의 제도 관련 개선방안

1) 「민법」의 친권상실 등의 규정(제924조)과 관련하여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게 된 때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권자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924조제1항),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장에서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먼저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직접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3) 친권상실 등과 관련하여 친권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한 명으로 되어 있는 현행 미성년 후견인의 수를 복수의 후견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제도처럼 법인도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 3. 친권 및 가사소송 관련 개선방안

1) 「민법」에서 친권상실이나 친권제한, 일시정지 등의 청구권자로 자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924조제1항), 「가사소송법」상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법과 괴리가 있고, 특별대리인 선임도 쉽지 않아 자녀가 청구하는 길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하여 법무부에서 작업 중인 가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소송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sup>103)</sup>, 이런 규정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에 미성년자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가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도와 자녀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고 면접교섭 등의 절차를 지원할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보조인은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완비될 경우 아동의 권익보호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가정위탁의 후견인제도 개선방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므로(아동복지법 제29조제4항), 부모가 없는 고아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

103)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5403&year=2016> (최종방문 2016년 10월 5일)

용되지 않으므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있어서 제도적 미비가 존재하게 된다.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해졌으나(제924조제1항) 이를 보호대상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친권의 공백을 채워주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나 친권 내용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아동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민법」을 보호아동에 초점을 두어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18조). 그러나 이 조항은 「민법」의 친권상실 및 제한제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친권제한 및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시설입소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시키고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하겠다.

## 제 4 절 기 타

###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예산과 담당 공무원 인력의 확보

아동의 안전과 보호 문제를 논할 때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예산상의 한계와 인력의 문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법제의 현실적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아동통합서비스의 실시 문

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전담공무원의 확충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안전과 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의 확보 문제는 오늘날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되는 현실에서 현안이 되는 사항이다. 아동의 안전과 보호 서비스의 실질적 수행이 오늘날 민간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과 민간의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 의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서비스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행정적 지위에서 한계를 갖고 있지 때문에 적정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담당 공무원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인력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I . 국내문헌

- 박주영, “미국의 친권상실제도에 관한 검토-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권 제1호, 2009
- 이용교,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8. 7.
- 최영진,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 II . 국외문헌

- Alfred Kadushin,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1974.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Grounds for Involuntary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2013.1.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2015.2.
-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Clergy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2015.8.
- Child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2015.8.
- 佐野文規, ‘児童虐待防止のための親権制度の見直し - 親権停止制度の新設、未成年後見制度等の見直し等-’, 『時の法令』 2012. 2. 28号(第1900号)

### Ⅲ.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5.13. 배포), “아동의 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관계부처 합동,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출입기자 설명회(2015.5.12.),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요약)”

[http://blog.pmo.go.kr/m/newblog/society.jsp?mode=view&article\\_no=1342&board\\_wrapper=%2Fm%2Fnewblog%2Fsociety.jsp&pager.offset=25&board\\_no=119](http://blog.pmo.go.kr/m/newblog/society.jsp?mode=view&article_no=1342&board_wrapper=%2Fm%2Fnewblog%2Fsociety.jsp&pager.offset=25&board_no=119)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블로그 “만사형통”)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일본, 법령정보제공시스템)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5403&year=2016> (대한민국, 매일경제)

<http://uscode.house.gov/statutes/pl/102/295.pdf> (미국, 연방하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53&ancYd=20140128&ancNo=12341&efYd=201409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about.html](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about.html)(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ofa.go.jp/mofaj/gaiko/jido/zenbun.html>(일본, 외무성)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32&page=6)(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www.newwaystowork.org/documents/ytatdocuments/FYCDE6CAFosterCareLegResources.pdf> (미국, New Ways to Work : 청소년관련 민간 단체)

<http://www.orangeribbon.jp/about/child/institution.php>(일본, Japan Network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http://www.shugiin.go.jp>(일본, 중의원(衆議院))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groundtermin.pdf>(미국, 연방 아동국)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30/57/> (미국, Justia(온라인 법률 정보제공시스템))

<https://www.childwelfare.gov>(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국)

<https://www.congress.gov>(미국, 연방의회도서관)

<https://www.gpo.gov/fdsys/pkg/STATUTE-88/pdf/STATUTE-88-Pg4.pdf>(미국, 연방정부간행물 디지털시스템)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9-138.ZO.html>(미국, 코넬대 로스쿨)